심의번호: 1504-01-053 (심의일: 2015년 4월 15일)

정기예금(전문투자자용)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정기예금(전문투자자용)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 거래에는 통장방식의 경우, "예금거래기본약관", "거치식예금약관" 및 이 예금특약이, 무통장방식의 경우 계좌및서비스에관한기본약관, 현지약관 및 이 예금특약이 적용된다.

제2조 예금종류

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한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전문투자자('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' 제9조 제5항에서 정의됨)로 한다.
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' 제9조 제5항

"전문투자자"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,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①국가

②한국은행

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④주권상장법인

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제4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신규금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.

제5조 가입방법

영업점 창구를 통한 가입만 가능하며, 인터넷을 통한 가입은 불가하다.

제6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일단위로 한다.

제7조 지급시기

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(만기일 포함)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.

제8조 중도해지

이 예금은 만기일 이전에는 지급이 불가하다.

제9조 이자

① 이 예금의 이자계산은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한다.

② 이 예금의 이자는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, 만기일 이후 해지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자에 대하여 원천 징수한 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
③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영업점에 게시한 아래의 기간별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 다만, 만기후이율은 신규일 당시 약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.

▶ 만기후 1개월 이내 : 만기 당시 고시한 1개월 일반정기예금 이율

▶ 만기후 1개월 초과 : 연1.0%

제10조 우대이율

이 예금은 기간별로 일반 정기예금 고시이율에 0.20%p(연이율,세전)를 더하여 우대이율을 적용한다.

※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